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사고대응 매뉴얼

2025.03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목 차

Ⅰ. 간호학과 안전관리 개요 ····· 1
1. 간호학과 실습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1
2. 간호학과 비상연락망 ····· 2
3. 간호학과 사고대응체계 ····· 3

Ⅱ. 사고대응 매뉴얼 ····· 4
간호학과 실습실 사고대응 보고체계 ····· 4

Ⅲ. 실습실 안전 및 사후조치 ····· 5
1. 감염관리 기준 준수 ····· 5
손위생 및 개인보호구 착용 ····· 5
사용한 물품 관리 ····· 6
주의(Precaution) ····· 7
의료폐기물 관리 ····· 8
2.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 9
상해 및 사고 예방 ····· 9
학생 안전 지침(실습실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 11
3. 학생인권 문제 예방과 관리 ····· 1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 12
학생 인권보로 지침 ····· 1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4
교내실습 사고보고서 양식 ····· 15

Ⅳ. 임상실습 안전 및 사후조치 ····· 16
1. 감염병 예방과 관리 ····· 16
손씻기/손위생 ····· 16
감염관리 : 주의(Precaution) ····· 17
보호구 착용 ····· 19
기침예절/호흡기 위생 ····· 21
주사바늘, 칼날 등 찔림사고 예방 ····· 22

2.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23
투약 기본 원칙 준수 ·····23
낙상 ·····23
환자이송 ·····.23
화재발생 ·····24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임상실습 안전관리 규정 ·····25
3. 환자 정보 보호 ·····27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목적 ·····27
정보보안 사고 예방 ·····27
실습 중 주의할 점 ·····27
4. 성희롱 예방과 관리 ·····28
정의 ·····28
종류 ·····28
환자가 학생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28
성희롱 발생 시 조치 ·····28
5. 임상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30

Ⅴ. 실습 인권 및 사후조치 ·····31
1. 인권의 정의와 특성 ·····31
인권의 정의 ·····31
인권의 특징 ·····31
2. 학생 인권보호 지침 ·····32
임상실습 학생 인권보호 지침 ·····32
임상실습 사고보고서 양식 ·····3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4

Ⅰ 간호학과 안전관리 개요

1. 간호학과 실습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비상연락망

2025.03.

직 위	성명	연락처	
		연구실	핸드폰
학과장	조**	4**3	010-4**7-7**5
교수	신**	1**3	010-7**6-9**1
교수	박**	2**7	010-9**1-8**0
교수	이**	2**4	010-4**5-9**2
교수	배**	2**2	010-9**8-3**3
교수	박**	1**8	010-4**8-4**2
교수	김**	2**2	010-4**5-1**9
교수	강**	2**2	010-5**6-1**8
교수	황**	4**5	010-5**8-0**4
교수	윤**	4**6	010-5**8-5**6
교수	강**	4**6	010-8**4-1**6

학 생 임 원				
직 위		학번	이 름	연락처
3학년	학회장	2023***9	박*빈	010-4**9-4**4
4학년	총 대	2020***4	박*혁	010-3**6-3**7
	부총대	2021***0	한*이	010-4**5-7**1
3학년	총 대	2023***0	김*연	010-5**2-3**7
	부총대	2023***4	이*희	010-8**6-6**7
	부총대	2023***6	최*혜	010-4**3-8**7
2학년	총 대	2024***7	이*윤	010-3**4-2**4
	부총대	2024***0	심*현	010-6**8-1**9
	부총대	2024***2	정*진	010-2**5-0**8
1학년	총 대	2025***8	홍*우	010-2**0-9**4
	부총대	2025***0	강*민	010-5**3-9**6
	부총대	2025***7	정*영	010-2**0-5**1

2. 간호학과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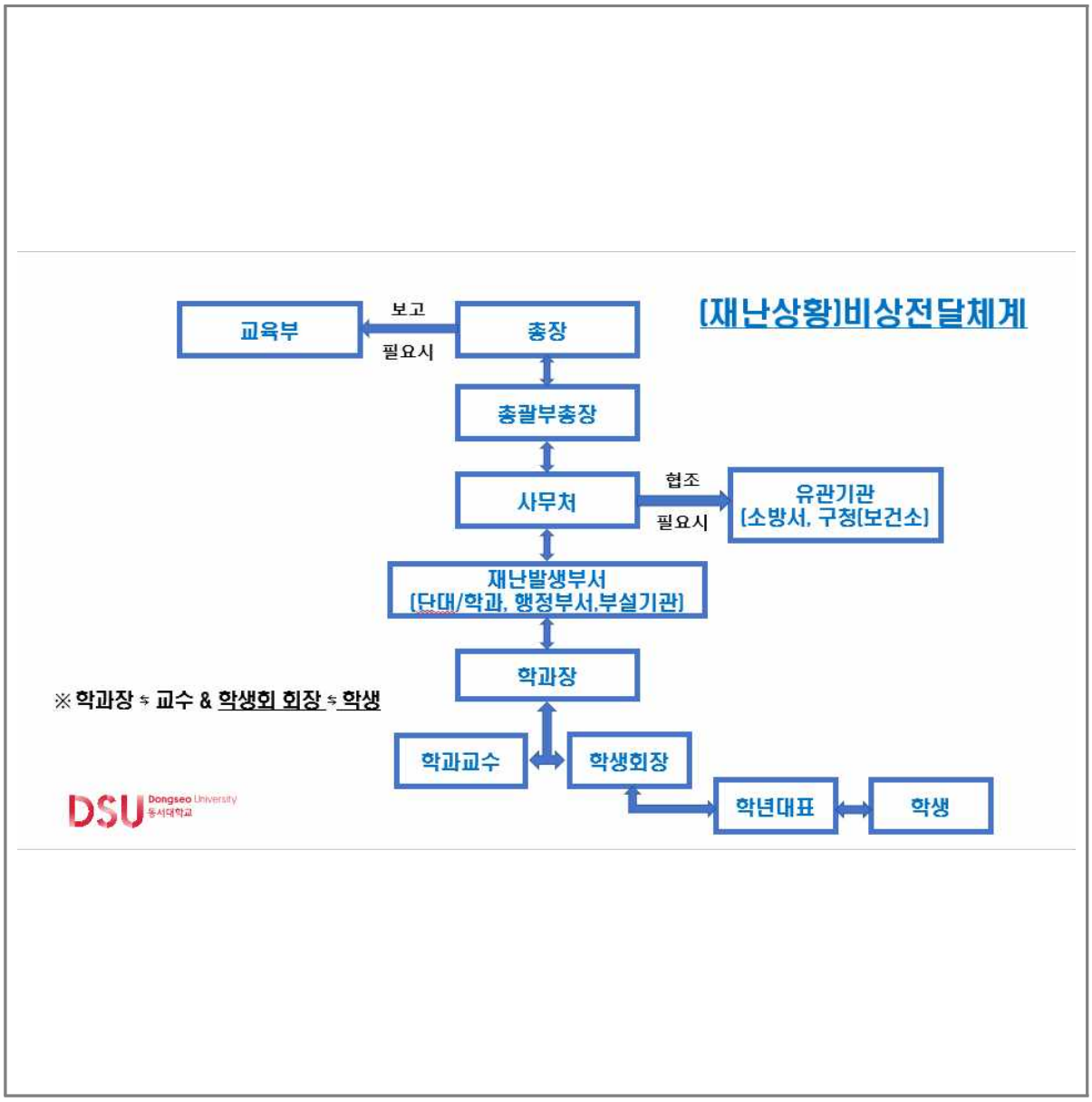
(재난상황)비상전달체계
교육부
보고
필요시
총장
총괄부총장
사무처
협조
필요시
유관기관
(소방서, 구청(보건소)
재난발생부서
(단대/학과, 행정부서,부설기관)
학과장
※학과장 ≒ 교수 & 학생회 회장 ≒ 학생
학과교수
학생회장
학년대표
학생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3. 간호학과 사고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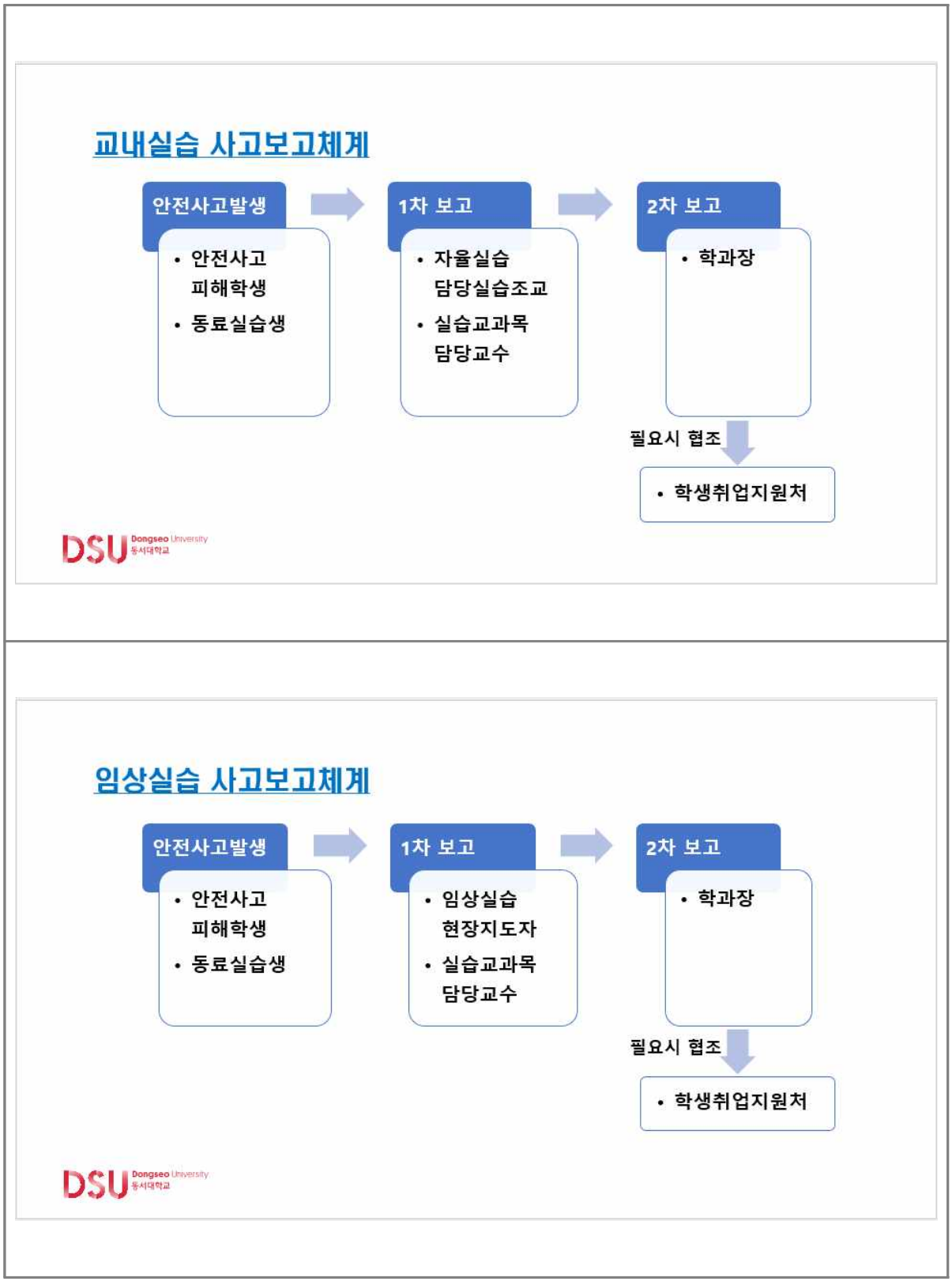

II 사고대응 매뉴얼

□ 간호학과 실습실 사고대응 보고체계

○ 비상연락망의 책임자는 학과장이며, 비상연락망과 사고대응 보고체계는 상시 작동한다.
○ 실습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와 함께 즉시 사고대응 보고체계를 작동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학과는 임상실습지도교원과 간호부에게 연락하며 임상실습지도교원은 학생에게 연락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은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지도자에게 연락하며 지도교원은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감염 위험성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 학과에서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조치하며, 필요시 검사 및 진료조치를 취한다.
○ 학과장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주요 사항을 보고한다.
○ 교내실습 시 임상실습에 준하여 운영되며 학생은 실습지도교원에게 연락하며 실습지도교원은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사고 수습 후 학생은 양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과에 보관한다.

Ⅲ 실습실 안전 및 사후조치

1. 감염관리 기준 준수

□ 손위생 및 개인 보호구 착용

○ 목적 : 미생물의 주된 전파원인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실습 중 수시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거나, 알콜젤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 필요 시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다.

○ 장갑 착용 전 후 알콜젤로 손위생을 실시 한다.

○ 실습실에서는 가벼운 옷차림 위에 지정된 랩 가운을 착용하여 외부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한다.

○ 손씻기 방법

○ 손씻기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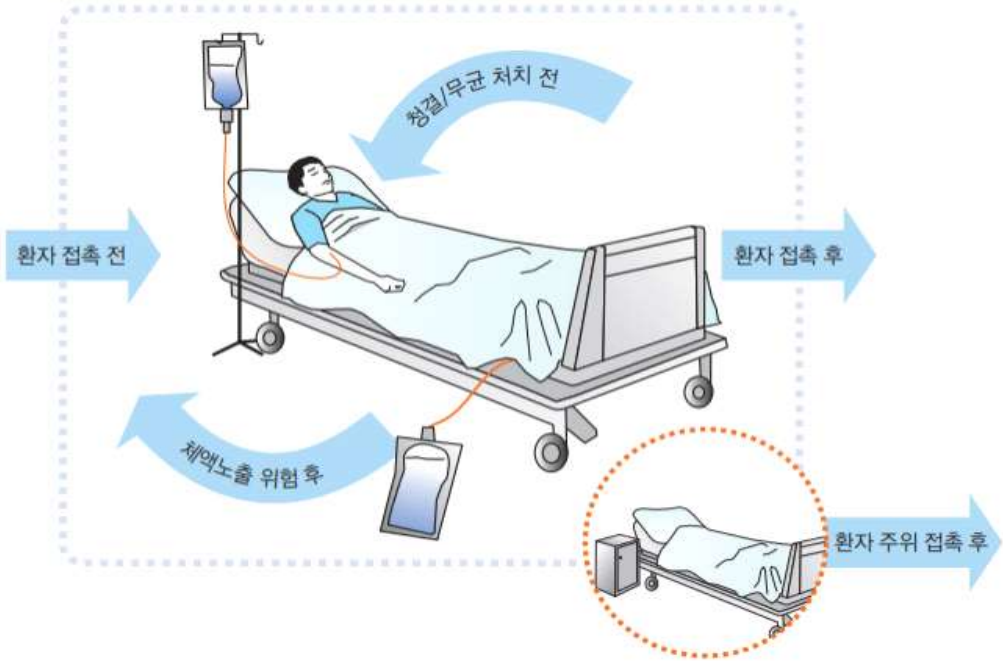

□ 사용한 물품 관리

○ 실습에 사용한 멸균 물품은 사용 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실습에 사용한 1회 용품 및 물품, 주사바늘, 알코올 스펀지 등은 전용 폐기물함에 버려야 한다.

○ 사용된 알코올스펀지를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알코올 캔에서 꺼낸 스펀지를 다시 알코올캔에 집어넣지 않는다.

○ 멸균생리식염수, 멸균 증류수 등의 멸균 용액은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오염된 경우 폐기한다.

○ 재사용하는 물품은 눈에 띄는 오염을 물과 비누, 세척액으로 제거한 후 반복 연습을 위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 실습에 사용한 물품은 일반폐기물, 의료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종류를 확인 후 버린다.

○ 실습실에서 사용한 마스크와 분리수거 물품은 폐기물 통에 분리수거 한다.

○ 실습실에서 사용한 물품은 바닥에 끌리거나 발로 밟아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된 경우 적절하게 세척하며 사용한 린넨류는 세탁물 수거통에 넣는다.

□ 주의(Precaution)

○ 목적 :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 지침

	표준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1인실		가급적 음압병실, 1인실, 방문은 항상 닫아둔다		
손위생	환자접촉 전/후, 청결/무균처치 전 혈액/체액과 접촉한 후 환자의 주변환경과 접촉한 후 투약시, 수술/시술 전,후	표준주의와 동일		
장갑	침습적/무균술 시행 시 혈액, 체액, 분비물 등 미생물과의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표준주의와 동일		환자접촉 전 항시 착용
가운, 비닐앞치마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튈 것이 예상될 때	표준주의와 동일		환자접촉 전 항시 착용
마스크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얼굴에 튈 것이 예상될 때	N95 마스크	환자접촉 전 항시 착용	표준주의와 동일
보안경, 안면보호대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얼굴에 튈 것이 예상될 때	표준주의와 동일		
환자이동		가능한 제한 이동 시 환자에게 외과용 마스크 착용		가능한 제한

□ 의료폐기물 관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의료폐기물의 종류

종류	해당 의료폐기물	
격리 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종류

- 봉투형 용기 : 합성 수지류 재질
- 상자형 용기 :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 재질

용기유형	봉투형 용기	상자형 용기	
용기재질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예			

2.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 상해 및 사고 예방

○ 바늘 찔림 예방

☞ 실습중 주사기 사용시 특별히 주의하며 해당 실습시간에 사용한 주사기를 당일 적절히 분리하여 버린다.

☞ 실습중 사용한 바늘은 recapping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 recapping 하지 않고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분리하여 버린다.

○ 안전한 주사 및 바이알 앰플 사용으로 출혈과 상처 예방

☞ 실습중 바늘이나 앰플, 바이알 등 사용시에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실습하고, 바늘이나 앰플 등에 찔려 상처 및 출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날카로운 앰플조각과 바이알은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분리하여 버린다.

○ 전기 안전사고 방지

☞ 실습실에서 전기로 작동한 기자재 사용시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코드 사용 금지한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거나 취급해서는 안된다.

☞ 실습 중 전기 및 전자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임의로 수리하지 않고 지도교원에게 알려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긴다.

☞ 실습실에서는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 학생 개인의 전기 및 전자 기기를 실습실내의 전원부에 연결하지 않는다.

☞ 실습중 물을 채워서 전기로 데워 사용하는 전기 침상, 세발기, 자불소독기 등의 경우, 코드에 물이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며 전기를 연결한 후 물을 받거나 물을 버리지 않는다.

○ 가연성 가스 폭발사고 방지

☞ 실습실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하며 화기를 지참 할 수 없다.

☞ 실습실 내의 산소 공급장치 혹은 이동형 산소탱크 등의 화기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인지하고 항상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 유해물질 누출 및 접촉

☞ 실습실 및 실습준비실에는 정해진 기준대로 유해물질을 보관하지 않는다.

☞ 누출 및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유해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습중 자극 증상 발생시 즉시 조치를 위한다.

○ 장비 및 기계 끼임 및 절단사고

☞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정리정돈 한다.

☞ 실습실 장비 및 기자재는 함부로 만지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가 있으면 지도교원이나 조교에게 요청한다.

☞ 실습실 및 실습준비실에 비치된 장비나 기자재를 이용하여 장난을 치거나 무리하게 밀거나 던지거나 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온열화상 및 화학물질 화상

☞ 실습중, 사용시 발열이 있는 장비와 적정온도 이하로 온도가 저하되는 장비는 작동시 주의하고 적정 온도 범위 및 모터의 구동 속도를 초과하여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실습중 사용하는 핫팩, 냉팩 및 적외선 치료기 등의 전기 가온 장치, 뜨거운 물주머니, 얼음 주머니 등의 사용에 특별히 주의한다.

□ 학생 안전 지침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 교과목 담당교수는 실습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은 교육을 받은 후 실습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학과는 사고대응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교내실습조교와 교과목 담당교수는 조치를 취하고 실습담당교수는 학과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 안전사고 피해학생은 양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학과장은 학과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실을 알리며, 필요시 대학본부 학생취업처에 연락하여 보험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학과 회의에서 사후조치 결정과 재발방지를 논의한다.

3. 학생인권 문제 예방과 관리

□ 성희롱 및 성폭력 등

○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실습중 다른 학생을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실습중 상대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는다.

☞ 실습중 다른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음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는다.

☞ 휴대폰이나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실습 중 다른 학생 혹은 실습 모형을 촬영하지 않는다.

☞ 실습 중 취득한 다른 학생의 신체나 외모,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단체톡, 대화방, 각종 SNS에 올리지 않는다.

☞ 실습실 내의 실습 전신모형 및 부분 모형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 조별 실습 혹은 실습 시범 과정에서 모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역할을 하거나 시범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이 강요나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하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며 지도교원 및 학생들은 학생의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인격을 존중한다.

□ 학생 인권보호 지침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윤리적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내실습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습 전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 실습의 내용이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모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료 학생의 신체노출이나 불편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모든 학생은 실습 중 인격적인 모욕이나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실습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인지되는 경우 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학생 인권침해로 인한 실습 거부나 이의제기 등으로 보고된 사안은 학과회의에서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취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교 과 목 명]

❑ 인적사항

- ❍ 학 과 명:
- ❍ 교과목명:
- ❍ 학　　번:
- ❍ 성　　명:

❑ 동의내용

본인은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0000” 수업에서 실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지한 실습태도로 임하겠으며, 실습은 모형에 충분히 연습한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이용 및 인권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실습교육 운영내규(실습실 안전관리) 및 동서대학교의 규정(인권보호)에 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를 표합니다.

교내실습 사고보고서 양식

1. 실습생

소 속	대학 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연락처			

2. 사고내용

실습교과목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처리결과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상기 실습생의 임상실습 사고 내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실습담당교수 : (인)

학과장 : (인)

동 서 대 학 교 간 호 학 과

Ⅳ 임상실습 안전 및 사후조치

1. 감염병 예방과 관리

□ 손씻기/손위생

○ 목적 : 미생물의 주된 전파원인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실습 중 수시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거나, 알콜젤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 손씻기 : 혈액, 체액 등의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손 소독 대신 손 씻기를 시행한다.

○ 장갑 착용은 손 위생을 대신할 수 없다.

○ 방법

❍ 손 위생이 필요한 5가지 경우(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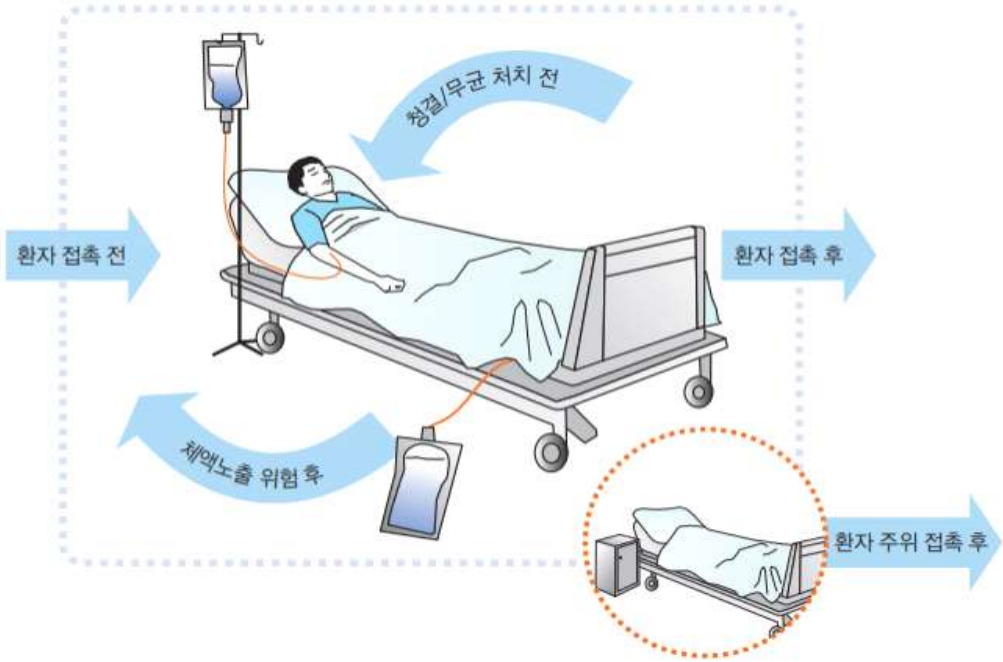

□ 감염관리 : 주의(Precaution)

❍ 목적 :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지침

Standard Precaution (표준주의)

-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환자가 대상임**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오염원으로 간주함**

Transmisson-based Precaution (전파경로별 주의)

- **질병의 전파 양식에 따라 적용되는 격리 주의**

Airborne (공기주의)	홍역, 수두, 결핵
Droplet (비말주의)	헤모필루스, b형 감염증, 수막구균질환, 폐렴구균성 폐렴질환,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등
Contact Precaution (접촉주의)	Shigella 등 1군 법정감염병, Hapatitis A, Rotavirus, 다제내성균, C.difficile 등

	표준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1인실		가급적 음압병실, 1인실, 방문은 항상 닫아둔다		
손위생	환자접촉 전/후, 청결/무균처치 전 혈액/체액과 접촉한 후 환자의 주변환경과 접촉한 후 투약시, 수술/시술 전,후	표준주의와 동일		
장갑	침습적/무균술 시행 시 혈액, 체액, 분비물 등 미생물과의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표준주의와 동일		환자접촉 전 항시 착용
가운, 비닐앞치마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튈 것이 예상될 때	표준주의와 동일		환자접촉 전 항시 착용
마스크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얼굴에 튈 것이 예상될 때	N95 마스크	환자접촉 전 항시 착용	표준주의와 동일
보안경, 안면보호대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얼굴에 튈 것이 예상될 때	표준주의와 동일		
환자이동		가능한 제한 이동 시 환자에게 외과용 마 스크 착용		가능한 제한

○ 의료폐기물 관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폐기물의 종류

종류	해당 의료폐기물	
격리 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종류

- 봉투형 용기 : 합성 수지류 재질
- 상자형 용기 :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 재질

용기유형	봉투형 용기	상자형 용기	
용기재질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예			

□ 보호구 착용

○ 마스크 착용

☞ 착용목적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직원에게 튀어 발생하는 오염 및 감염을 예방하여 직원을 보호
- 의료인의 비밀에 있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기회를 차단

☞ 착용시기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직원 얼굴이나 점막에 튈 가능성이 있을 때
- 비말전파가 가능한 환자 1m 이내 접근 시
- 수술, C-line 삽입, 요추천자 등의 침습적 시술시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사용

☞ 주의사항

-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밀착하여 착용한다.
- 사용 중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오염물이 많이 묻거나 젖었을 경우, 사용 목적이 끝났을 때 즉시 폐기하고, 필요 시 새 마스크를 착용한다.
- 사용한 마스크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 마스크의 앞면은 균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 마스크 벗은 후에 손위생 시행한다.

○ 보안경 및 안면보호용구

☞ 착용목적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어 직원의 얼굴이나 눈, 코, 입 안의 점막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미생물의 침투로부터 직원을 보호

☞ 착용시기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직원 얼굴이나 점막에 튈 가능성이 있을 때

☞ 주의사항

- 업무 중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
- 보호용구의 앞면은 균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음
- 안면보호용구를 벗은 후 적절한 세척과 소독 없이 목에 걸치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음

○ 격리실 가운

☞ 착용목적

- 혈액, 분비물 등에 의한 직원의 피부나 옷의 오염을 예방하여 미생물의 침투로부터 보호의료인의 옷 또는 피부에 있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기회를 차단

☞ 착용시기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어 직원의 피부나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 접촉주의 환자 혹은 주변물품 접촉 전

☞ 주의사항

- 환자와 접촉면의 넓이, 오염물의 양,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가운을 선택
- 접촉면이 넓거나 오염물이 많은 경우 소매 있는 가운을 착용 그 외에는 비닐 앞치마를 착용
- 가운을 벗을 때 오염된 바깥부분이 안쪽으로 오도록 말아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사용 중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오염물이 많이 묻은 경우, 사용 목적이 끝났을 때에는 즉시 폐기하고 필요 시 가운을 새로 착용함
- 가운을 벗은 후 손 위생을 시행

□ 기침예절/호흡기 위생

○ 감기나 백일해 등의 흔한 감염질환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

○ 기침, 코막힘, 콧물,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료진, 수탁교육생, 환자와 내원객 모두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첫 시점에 적용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잘 준수되어야 함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함(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지나 옷소매 이용하여 가림).

☞ 사용한 휴지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폐기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하거나 튄 경우 손위생을 수행

□ 주사바늘, 칼날 등 찔림사고 예방

○ 시술공간과 날카로운 기구의 위치에 대해 주의 유지

○ 기구 조작 시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일정 거리를 유지

○ 날카로운 기구는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트레이 등 'neutral zone' 을 이용하며, 구두로 알림

○ 재사용 위해 recapping 해야 하는 경우는 One-hand technique 사용

○ 손상성폐기물 박스가 가득 차 있는지,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

○ 손상성폐기물 박스에 손을 대거나 넣거나 하지 않음

○ 폐기 시 손은 항상 기구의 날카로운 부분 뒤에 위치

○ 나비바늘과 같이 튜브가 연결된 기구는 튜브가 꼬이면서 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

2.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 투약 기본 원칙 준수

○ 환자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정보로 확인

○ (5 right) 정확한 환자,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투여경로

□ 낙상

○ 낙상 고위험 환자의 낙상 방지

☞ 낙상 고위험 환자임을 알리는 표식

- 주황색 환자확인용팔찌
- 병실 입구 이름표
- 주황색 추가표식, 낙상주의 팻말

☞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주의를 안내

☞ 환자 이동 시 항상 보호자가 지지하도록 교육

☞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직원이 환자의 이동지지

☞ 침상 난간이 있는 경우 항상 난간을 올려두고 검사대의 안전벨트를 적용

○ 낙상 발생 시 대처

☞ 학생: 간호사에게 알림

☞ 간호사: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담당의사에게 연락

☞ 의사: 환자상태 확인, 필요한 진료 수행

☞ 낙상경위, 중재 및 처치 등에 대해 QI 통해 보고

□ 환자이송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의 제거 및 최소화

○ 들기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

☞ 들기 작업 전에 먼저 옮길 장소와 방법을 정한다

☞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한 상태에서

☞ 손과 다리의 근육을 사용하여 환자의 몸에 최대한 근접할 것

☞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할 것

☞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거나 비트는 동작을 피하고

☞ 침착하고 서서히 들어 올릴 것

☞ 환자를 들어 올리는 동안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 것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환자이송카를 사용하도록

○ 환자 이송 시 가능한 3인 이상이 작업을 실시하도록

□ 화재발생

○ 일반 주의 사항 준수 및 비상구 위치 확인

○ 화재 발생 지역 반대 방향으로 이동

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접근

②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음

③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쥠

④ 불길 주위에서 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임상실습 안전관리 규정

간호학과 임상실습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서대학교 간호학과(이하 "학과"라 한다)의 임상실습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과에서 시행되는 실습 중 대학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에 의거한 교내 실습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임상 실습교과목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란 임상실습 기간 중 안전 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주는 사고와 감염성 질환 등의 이환을 포함한다.

제4조(실습 전 안전관리 의무) ① 학과는 실습 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학생은 임상실습 전에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단, 질병유형에 따라 예방접종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2. 학생의 건강상태(질병, 임신 등)로 예방접종이 불가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강검진 검사결과지 및 예방접종 증명서의 원본은 학과에서 보관하며, 임상실습기관의 요청 시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과는 임상실습 전 안전사고와 관련한 종합보험을 가입한다. 단, 상해의 중증도 분류로 인해 보험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실습 전 공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실습 중 안전관리 의무와 권리) ① 학생은 임상실습 시에 각 실습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손상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에는 마스크, 가운, 장갑, 보호 장비 등을 사용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실습기관에서 제한하는 위험 약물이나 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조치) ①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확인자는 다음과 같은 사건보고체계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24.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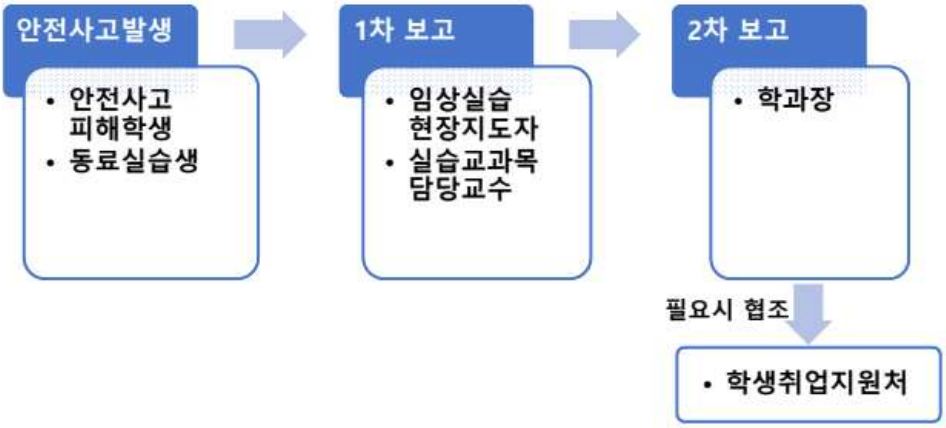

[사건보고체계]

②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기관의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와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교와 실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조치하고,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 이를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③ 안전사고 피해학생은 양식에 따라 임상실습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학과장은 필요시 간호학과 실습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실습의 지속여부 및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 · 의결한다.

⑤ 안전사고로 인해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학과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환자 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목적

○ 목적 :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로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함

□ 정보보안 사고 예방

○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수집, PC 내 저장 및 처리 금지
○ 실습 중 취득한 주요 정보 및 환자 정보의 SNS 등 온라인 유포, 업로드 금지
○ 접근 권한이 없는 시스템, 환자 정보의 무단 접근 시도 및 열람 금지
○ EMR 패스워드 공유 및 모니터 부착 금지
○ 실습 중 자리 이석 시, 로그아웃

□ 실습 중 주의할 점

○ 컴퓨터 모니터에 환자정보 방치 금지
○ 책상에 환자기록 방치 금지
○ 화이트보드, 게시판에 환자정보 작성 금지
○ 복도, 엘리베이터, 버스 내에서 환자에 대한 대화 금지
○ 실습외의 목적으로 다른 환자정보 열람 금지
○ 환자기록지 출력 절대 안됨
○ EMR화면 핸드폰 사진촬영금지

4. 성희롱 예방과 관리

□ 정의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종류

○ 육체적 성희롱 행위

☞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문자, sns,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 대하는 언동

○ 시각적 성희롱 행위

☞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

□ 환자가 학생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 이렇게 대응 합니다!!!

☞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

☞ 편지, 메일,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를 수집§

☞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등과 상담하고, 문제해결(고충처리, 중재・조정)을 요구

☞ 외부 관계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음

□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습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음

5. 임상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 학생은 임상실습지도교원, 임상실습현장지도자(교육부서의 부서장)에게 보고
- ❍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실습지도교수에게 보고
- ❍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기관 지침에 따라 초기대응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학과 실습지도교수에게 정보제공하고, 필요시 감염관리실 연락 및 조치
- ❍ 학과 실습지도교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하며 필요조치를 취함
- ❍ 학과장은 학과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실을 알리며 필요시, 대학본부 학생취업처에 연락을 하여 보험 등의 조치를 취함
- ❍ 학과회의에서 사후조치 결정과 재발방지를 강구하며 필요시, 해당 실습기관과 회의를 열어 재발방지를 논의함

Ⅴ 실습 인권 및 사후조치

1. 인권의 정의와 특성

□ 인권의 정의

○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
○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는,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권리
○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

□ 인권의 특징

○ 기본적 권리;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로서, 남에게 넘겨줄 수 없음
○ 보편적 권리;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 약자 보호;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인 인권은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임
○ 권리와 책임;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지켜주어야 책임이 있음.
○ 개인과 집단; 인권 침해 현상이 사회 구조나 힘의 관계에서 나타날 경우 개별적 인권으로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적 대처보다는 집단으로 대처하면서 사회구조에 초점을 두어야 인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음

2. 학생 인권보호 지침

□ 임상실습 학생 인권보호 지침

○ 학과에서는 해당 실습 기관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실습 가능한 범위를 학생들에게 고지한다.

○ 학생은 실습 중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학생은 실습 중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학생은 실습 중 병원의 직원이나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 성추행에 노출되면 당사자에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즉시 간호단위 책임자와 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 실습지도교원은 학생이 인권침해나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간호단위 책임자와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학과장은 협의 내용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당국에 보고하고 해당 실습 기관과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임상실습 사고보고서 양식

1. 실습생

소 속	대학 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연락처			

2. 실습기관

실습기관	
실습부서	

3.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처리결과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상기 실습생의 임상실습 사고 내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현장지도자 : (인)
실습지도교수 : (인)
학과장 : (인)

동 서 대 학 교 간 호 학 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교 과 목 명)

❑ 인적사항

- ❍ 학 과 명:
- ❍ 교과목명:
- ❍ 학　　번:
- ❍ 성　　명:

❑ 동의내용

본인은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0000” 수업에서 실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지한 실습태도로 임하겠으며, 실습은 모형에 충분히 연습한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이용 및 인권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실습교육 운영내규(실습실 안전관리) 및 동서대학교의 규정(인권보호)에 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를 표합니다.